

2016년 조촌동 종합감사 결과보고

1 조촌동 지적사항 목록 및 조치

연번	제 목	조치계획
▣ 행정상 : 19건 (시정 10, 주의 9) ▣ 신분상 : ▣ 재정상 : 5건		
1	특근매식비(급량비) 지급 부적정	행정상 : 주의
2	세출예산 지출증빙서류 작성 소홀	행정상 : 주의
3	신용카드 사용절차 준수 부적정	행정상 : 시정
4	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	행정상 : 시정
5	신명이카드(교통카드) 관리 부적정	행정상 : 시정
6	월액여비에서 청우회비 원천징수 부적정	행정상 : 주의
7	비밀문서 관리 소홀	행정상 : 시정
8	당직근무자 재택근무 및 청사보안관리 소홀	행정상 : 주의
9	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계약 없이 강좌운영	행정상 : 주의
10	물품관리대장 등재 소홀	행정상 : 시정
11	관용차량 관리 소홀	행정상 : 시정
12	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부적정	행정상 : 주의
13	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관리 소홀 및 수수료 징수 누락	행정상 : 시정
14	주민등록증 관리 소홀	행정상 : 주의
15	주민등록 일제정리(사실조사) 소홀	행정상 : 주의
16	장애재판정 업무 소홀	행정상 : 주의
17	건설공사 감독 및 정산 소홀	행정상 : 시정
18	건설공사 이윤 과다 지급	행정상 : 시정
19	사회보험료 계상 부적정	행정상 : 시정

2 지적내용 요약 및 세부조치

지적내용 요약	처분조치(안)
1. 특근매식비(급량비) 지급 부적정 □ 사무관리비로 급식비 집행은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게 1인당 1식 7,000원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□ 전직원 참여 체육대회 후 회식하고 식대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특근매식비 집행시 회식에 참여한 직원까지 포함함으로써 직원격려 회식비와 특근매식비를 중복지급하여 특근매식비 총 ***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음	행정상 : 주의
2. 세출예산 지출증빙서류 작성 소홀 □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52조에 따르면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하나 □ 2013. 12. 13. 군산시늘푸른학교 학습장 재료비(난방비) 외 6건을 집행하면서 증빙서류(영수증, 품의서 등)를 누락하는 등 세출예산 지출증빙서류 작성을 소홀히 하였음	행정상 : 주의
3. 신용카드 사용절차 준수 부적정 □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(별표 제1호서식)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고,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·후임 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 후 이를 수수(授受)하고,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 날인 하여야 함에도 □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·비치하지 않고 있음	행정상 : 시정

지적내용 요약	처분조치(안)
4.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□ 지방재정법 제65조에 따르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고, 군산시재무회계규칙 제52조의 2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여야 하나, □ 감사일 현재까지 양곡 등 복지업무와 관련한 수납내역 **건과 시 행사 등과 관련한 행정업무 수납내역 **건, 총 **건의 세입세출외현금이 발생했음에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하지 않고,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를 작성하지도 않았음	행정상 : 시정
5. 신명카드(교통카드) 관리 부적정 □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제52조의 2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□ 감사일 현재까지 교통카드 충전 계좌 입출금내역을 지방재정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고, 2013~2015년 감사대상 기간 발생한 이자수입 **원과 마이비, 캐시비 충전수수료 ***원, 총 ***원을 반납처리 하지 않았음	행정상 : 시정
6. 월액여비에서 청우회비 원천징수 부적정 □ 지방재정법 제71조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지출원은 법령, 조례,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으나, □ 감사대상 기간 동행정과 무관하게 직원들 자체적으로 친목도모를 위해 운영중인 청우회의 통장을 조촌동 기관명의로 발급하여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관리하면서, 월액여비 지급시 아무런 근거(원천징수에 대한 동의 등) 없이 직원별 1만원씩 원천징수한 후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청우회비 계좌로 입금하였음	행정상 : 주의

지적내용 요약	처분조치(안)
7. 비밀문서 관리 소홀 □ 보안업무규정 제22조는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·분류·접수·발송 및 취급 등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고자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,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모든 비밀에 대한 보안책임 및 보안관리 사항이 정확히 기록·보존되어야 함에도 □ 비밀문서 확인 결과, 파기기한이 지난 문서 **건을 보관중이고, 비밀문건 소각대장의 경우 파기문건의 접수월일과 입회자 날인 미작성 내역이 **건이며, 비밀보유 현황조사서 및 비밀현황 증감내역의 경우 2005. 7월부터 비밀문서 접수 및 파기 등에 따른 변동내역을 작성하고 내용을 비치하고 있지 않음	행정상 : 시정
8. 당직근무자 재택근무 및 청사보안관리 소홀 □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에 따르면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·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·숙직·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,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, □ 2000. 0. 0. **급 0000는 당직임에도 사무실에 00:00에 출근하였고, 2000. 00. 00 **급 0000은 출근하지 않았으며, 또한 2000. 0. 0.에는 조촌동 직원(무인경비업체 확인결과 직원명단 확인불명)이 00:00에 사무실 무인경비를 해제하고 당일 퇴청 후 청사 보안장치인 무인경비를 경계하지 않았으며, 다음날 00:00에 동일 직원이 경계하는 등 재택근무와 청사 보안관리를 소홀히 하였음	행정상 : 주의

지적내용 요약	처분조치(안)
9.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계약 없이 강좌운영 □ 예산의 지출을 수반하는 주민자치센터 유급 강사 채용은 「지방계약법」에 따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체결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나, □ 2013~2015년 요가(1,2반), 한국무용 프로그램에 2명의 유료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면서 정당한 계약 없이 운영한 사실이 있음	행정상 : 주의
10. 물품관리대장 등재 소홀 □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제24조에 따르면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,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□ 2014. 2. 12. ○○ 외 4건의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관리대장 또는 전산망(새울행정시스템)에 구입내역을 등록하지 않았음	행정상 : 시정
11. 관용차량 관리 소홀 □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, □ 회계과-4917(2014.11.26.)호 공문에 따라 관용차량 관련 새울행정시스템에 운행일지, 정비기록, 제세공과금, 유류수불사항 등의 전산입력을 하여야 하나, □ 감사일('16.2.19) 현재까지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, '13. 9. 30~'15. 12. 29.까지 14건의 차량정비 내역을 새울행정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으며, 또한 2건의 유류수불내역을 등록하지 않는 등 관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	행정상 : 시정

지적내용 요약	처분조치(안)
12.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부적정 □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,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·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, □ 2013~2015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를 처리하면서 담당자가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서류를 수령한 후 접수 및 선람처리를 하지 않고 처리한 사실이 있음	행정상 : 주의
13.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관리 소홀 및 수수료 징수 누락 □ 주민등록법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자가 수수료 면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재발급 수수료로 5,000원을 징수하고, 재발급신청서에 수입 증지로 인증하여 세외수입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□ 감사대상 기간 확인 결과, 신청서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신고를 수리하였고, 또한 분실로 기재했음에도 증지수입을 징수하지 않는 등 재발급 수수료 총***원을 징수 누락한 사실이 있음	행정상 : 시정
14.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□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하여 주민등록증 회수대장에 기록하고 매분기 1회 이상 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□ 미교부된 주민등록증 총 12매중 민원인이 수령하지 않아 회수처리해야 할 대상(발급일로부터 3년이상 해당) 4매를 회수·파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 절차를 소홀히 하였음	행정상 : 주의

지적내용 요약	처분조치(안)
15. 주민등록 일제정리(사실조사) 소홀 □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나, □ 감사대상 기간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5회 실시하면서 1차 세대별 명부를 통한 주민등록 전수조사시 신고 의무자인 세대주 확인이나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다면 통장의 확인이 필요하지만, 빈 여백으로 남겨두거나 미거주 또는 이사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2차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통별 전수조사를 마무리한 건이 다수 있으며, □ 또한 2차 사실조사를 실시한 경우 사실조사서에 해당 통장 확인 없이 주민등록 담당자 확인만으로 사실조사서를 작성한 건이 있고, 또한 직권조치 사항에 대한 서류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 행정사항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며, 특히 2015년 상반기 일제조사의 경우에는 문서관리 소홀로 보관서류가 유실되는 등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였음	행정상 : 주의
16. 장애재판정 업무 소홀 □ 2015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,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재판정이 실시되도록 하여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나, □ 장애인 ○○○○의 경우, 장애인등록 취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('15.○.○.)부터 감사일 현재 까지 8개월 경과하였음에도 장애인 재판정 불응에 따른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	행정상 : 주의

지적내용 요약	처분조치(안)
17. 건설공사 감독 및 정산 소홀 □ 20○○. ○. ○. ○○○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행정계시관 설치공사를 시행하였음 □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고, 착공단계에서 세부 공종별로 설계도서의 오류나 현장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물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, 설계도서에 따라 공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준공처리 해야 하나, □ 설치 현장을 확인한 결과, 당초 설계와 다르게 계시대 지주를 스테인리스가 아닌 철판을 사용하여 일부 녹슨 부분이 있고, 계시대 강화유리는 두께8m/m가 아닌 5m/m를 사용하였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준공처리하여 공사비 ***원을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였음	행정상 : 시정
18. 건설공사 이윤 과다 지급 □ 지방계약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, □ 작성된 원가계산서를 살펴보면 2015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공사비 50억원 미만은 이윤을 15%이하로 적용하여야 하는데, 20%로 잘못 산정하여 도급자와 과다 계상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체결하여 도급자에게 ***원을 과다 지급하였음	행정상 : 시정

지적내용 요약	처분조치(안)
19. 사회보험료 계상 부적정 □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(국토부 고시)를 보면, 총 공사금액[(도금액+관급재료)에서 부가세 제외]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적용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, □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홍보게시판 설치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(○○광고사)와 계약 체결하였으므로 사회보험료(산재·고용보험료)를 감액 후 계약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액치 않고 계약체결하여 ***원을 부당 지출하였음	행정상 : 시정